

근로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(법과 규정)

근로자산업재해보상법 제3부 제3장 - 고용주, 근로자 및 기타인의 일반 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

제115조(2)(f) 이 법과 해당 규정의 사본을 고용주의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며, 고용주의 근로자들이 정규 채용된 각 작업장에 이 사본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고지문을 게시하여 상시 게시한다.

이 현장에서

근로자산업재해보상법과
산업보건안전규정을 볼 수 있는 장소는
다음과 같습니다.

이 법과 규정은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:

- **WorkSafeBC.com** - Quick Links에서 OHS Regulation을 누르십시오.

도움이 더 필요한 분은
감독자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.